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김형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5조)
 -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며,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
- 도민의 협력 규정(안 제6조)
 -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

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도지사는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 충청북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 인권보고서 발간 및 실태조사(안 제8조)

- 도지사는 5년마다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안 제9조)

-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 권장.

○ 인권센터의 설치(안 제10조)

-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인권센터의 업무를 규정.

○ 인권헌장 제정·선포(안 제11조)

- 충청북도 인권헌장을 제정·선포하도록 함.

○ 인권위원회 운영(안 제13조 ~ 제19조)

-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권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4.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으며,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의 의무화, 인권센터의 설치, 인권위원회의 설치, 인권헌장의 제정·선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충청북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붙임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